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제460호

제출년월일 : 2001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연장  
· 출산 전후 60일 허가 → 출산 전후 90일 허가

### 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(생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90일----- -----
③내지⑩(생략)	③내지⑩(현행과 같음)

## 근거법령 발췌

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의 위임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법률

### 도 보 로 함

#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